

#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0. 23.

발의자 : 안민석 · 노웅래 · 손혜원  
고용진 · 김병욱 · 오영훈  
송갑석 · 이동섭 · 박홍근  
김태년 · 인재근 · 이상현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,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‘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’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,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24조).

법률 제 호

##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5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별 칙)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<u>5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24조(별 칙) ----- ----- ----- <u>2천만원</u> ----- -----.